

FIP-2012-0005

(통권 제195호, 2012. 12. 31)

중국 경쟁법의 집행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ISSUE
PAPER

Contents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중국 경쟁법의 구조와 유의점	3
1. 중국 경쟁법의 구조	3
2. 반독점법의 개요와 유의점	4
3. 가격법의 개요와 유의점	7
4.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요와 유의점	8
III. 중국 경쟁법 집행상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10
1. 반독점법의 경우	10
2. 가격법의 경우	14
3. 반부정당경쟁법의 경우	15
4.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 Nike Case	15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17
1. 중국 경쟁법의 심화 연구	17
2. 기업의 대응	17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성욱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I: +86-21-6085-2902(Shanghai) E-mail: sungwook.kim@bkl.co.kr

● ● ● 요약 ● ● ●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 상대국으로 건국 이래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중국은 반독점법을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하면서 반독점법에 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점점 강력하게 집행하는 경향
 - 중국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경쟁법규와 최신동향에 대하여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
 - 중국 경쟁법은 한국기업들에 실질적인 risk로 대두되고 있음
- 중국 경쟁법의 구조
 - 중국 경쟁법은 크게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부 유사)으로 구성
 - 경쟁법의 집행기관도 상무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으로 나뉘어 있음
 - 경쟁법 집행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반독점법)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점
 - (가격법) 가격카르텔, 약탈적 가격설정, 기타 가격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 (반부정당경쟁법) 가격이외의 독점협약(부당공동행위)와 가격 이외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율
- 중국 경쟁법의 집행 동향
 - 최근 1, 2년간 3대 경쟁법의 세부규정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경쟁법의 집행을 점차 강화하는 경향
 - 한국, 미국, EU 및 일본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 원리들을 도입
 -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국 경쟁법 관련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필요
 - 중국 경쟁법 해설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업이 공유할 필요
 - 중국 사업 practice에 대해 경쟁법 관점에서 내부 compliance 준칙을 마련할 필요

I. 검토 배경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 경제를 전망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함
- 수교 첫해인 1992년 13만 명에 불과했던 양국 간 방문객은 지난해 670만 명에 달하여 52배가 증가, 대중국 수출액은 26억 5,000만 달러에서 1,341억 6,000만 달러로 50배 증가
 - 중국이 한국의 제1의 무역상대국이 된지 10년이 되었고, 중국은 최근 세계의 생산기지로서 상품시장으로서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2007. 8. 30.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이하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2008. 8. 1.자로 시행
-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을 중심으로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세부규정으로 구성
 - 반독점법 시행초기에는 중국정부도 참고할 만한 판례나 집행 경험이 없었으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였음
 - 중국 정부는 지난 4년간 반독점법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집행을 강화
 - 가격법과 반부정당경쟁법도 위반사례가 증가
- 한국의 대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
 - 실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쟁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중국 경쟁법에 대한 이해도나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

- 한국 공정거래법도 1980. 12. 31. 제정된 후 수년간 공정거래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음
 - 중국도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중국 경쟁법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커짐
 - 중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따라 중국내 M&A 뿐 아니라 해외의 M&A에 대해서까지 중국 반독점법이 적용
 - 한국기업들이 최근 5년간 전세계에서 카르텔(담합)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2조 4,000억 원(공정거래위원회 2012. 4.)
 - 중국정부도 각국의 경쟁당국과 교류하면서 가격담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미국과 EU에서의 가격담합 사례는 중국 경쟁당국에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음
- 중국 반독점법 시행 초기에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이 일부 있었으나 당시에는 법규의 번역을 위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음
 - 최근 반독점법의 세부 규정들이 제정되면서 반독점법이 어느 정도 완결된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음
- 최근 제정된 경쟁법 관련 세부 규정들 및 중국 정부의 경쟁법 집행의 사례¹⁾와 실무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해설서 내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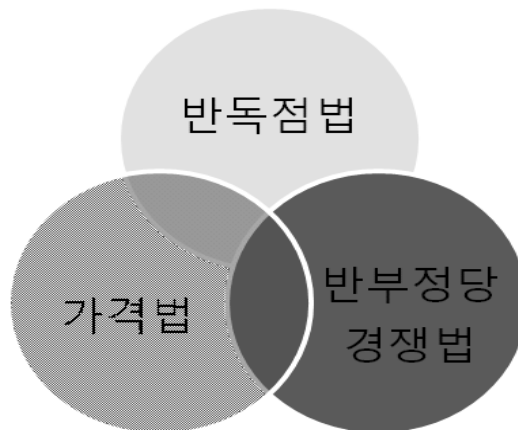
1)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이 거부되거나 조건부 허가된 모든 사례의 분석을 포함

Ⅱ. 중국 경쟁법의 구조와 유의점

1. 중국 경쟁법의 구조

- 중국 경쟁법은 크게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²⁾ 및 관련 세부 규정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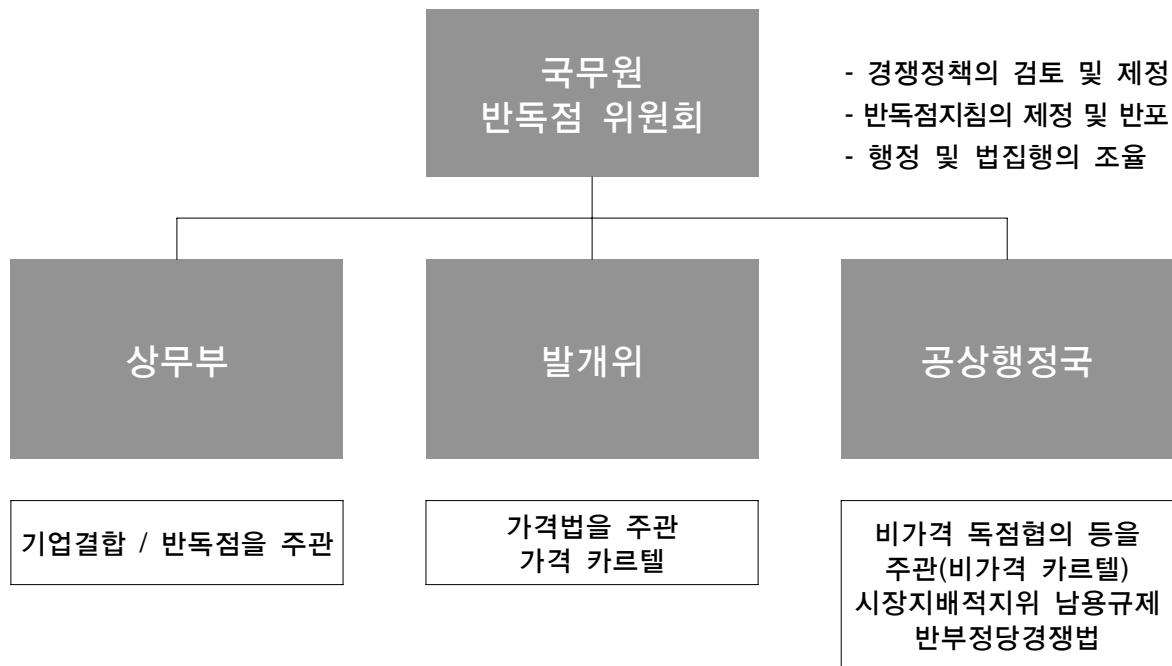
< 중국 경쟁법을 구성하는 3대 법률 >



- 위 3가지 주요 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들이 다수 존재
- 그밖에 소비자보호법, 광고법 등 경쟁법과 관련이 있는 법규정이 산재
- 최고인민법원의 “반독점협의로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을 심리하는데 적용되는 법률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审理因垄断行为引发的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주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여러 정부부처가 경쟁법을 집행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 경쟁정책의 검토 및 제정, 시장 경쟁상황을 조사, 평가,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반포, 반독점 관련 행정 및 법집행의 조율
 - 이하 3개 기관이 구체적인 경쟁법 집행기관(三定原则/三定方案)
 - (1) 상무부 : 반독점법 중 기업결합(M&A)/반독점을 주관
 - (2)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 가격 카르텔 및 가격법을 주관
 - (3) 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행정국”) : 비가격에 관한 독점협약, 반부정당 경쟁법을 주관

2)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부 유사

< 중국 경쟁법 집행기관 구조도 >



- 이러한 각 부처별 기능과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 독점협의(카르텔)에 관한 내용이 가격에 관한 것과 비가격에 관한 것을 동시에 포함할 경우 기관 간 업무 분장의 충돌가능성 : 원칙적으로는 발개위와 공상행정국이 동시에 관할권을 가지되 먼저 조사를 개시한 기구에서 주된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기구는 협조
- 3개 기관 간 경쟁법의 관할에 관한 내용이 명백히 정리되지 않는 못함

2. 반독점법의 개요와 유의점

- 반독점법은 부당공동행위(독점협의: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제3장), 기업결합(경영자집중: 제4장) 등 주요 개념을 도입
-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은 반독점법의 세부규정들이 공포되었으나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최고인민법원에서도 반독점으로 인한 민사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

1) 부당공동행위의 규제

- 상품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 : 소위 가격 담합(cartel 내지 영미법상 price-fixing을 규제)
 - 어느 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 담합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소위 “경쟁법의 역외적용”)(반독점법 제2조 단서)

ex) 한국 대기업과 일본 대기업이 일본 등지에서 담합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그러한 담합의 효과가 미국에 미쳤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총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중국에서도 가능함
ex) 홍콩, 대만에서의 담합을 이유로 중국에서 처벌이 가능
ex) 중국에서 가격담합을 처벌받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유력한 위법사실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존재.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담합으로 처벌받게 되면 중국에서 유력한 위법사실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존재함. 실제로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담합의 중국 내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중국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그밖에 반독점법이 규제하는 부당공동행위의 주요 유형
 - 상품의 생산수량이나 판매수량 제한
 -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입시장 분할
 - 신기술, 신설비 구입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 경쟁제한적 합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동의 거래거절”과 유사)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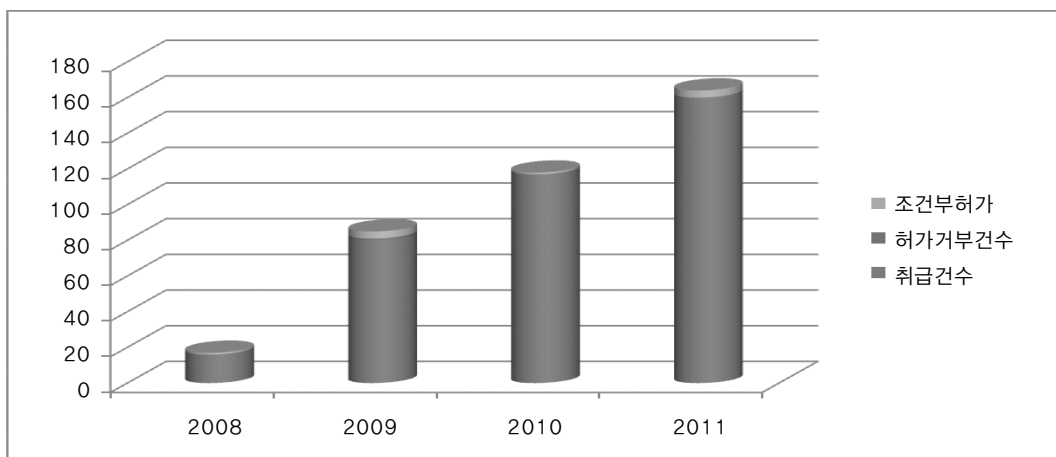
- 시장지배적 지위란?
 - 경영자(사업자)가 관련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거나, 기타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저지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시장지위
- 시장지배적 지위는 한국에서 대기업이라는 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중국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기업이어야 함

- 한국에서 대기업(예를 들어 10대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라도 특정 분야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중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일부 한국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정은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3) 기업결합(중국법상 용어는 “경영자집중”)

- 경영자집중이란?
 - 경영자 합병
 - 경영자가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 등으로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
 -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2009년 코카콜라사의 중국 과일주스음료 제조업체 인수 건이 중국상무부의 경영자집중 승인 거부로 무산된 이후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M&A)에 관한 조항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집중
- 상무부에서 처리하는 경영자집중 사건 숫자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
 -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한국기업 신고건수도 급증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 외에서 M&A 또는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중국에서 신고하는 한국기업들이 증가

< 중국상무부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사건 처리 숫자비교표 >



- 반독점법 시행 이래 경영자집중을 거부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한 사례들이 대규모 중요 거래들이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12. 7. 7. 개정된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신고표에 의하여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집중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해짐
- 한국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3. 가격법의 개요와 유의점

1) 개요

-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대부분은 국가가 결정
 -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입법론 차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8. 5. 1.부터 가격법을 시행
- 가격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제14조)
 - (i) 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경영자 또는 소비자에 손해를 가함
 - (ii) 원가 이하의 덤핑 및 경쟁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생산 경영질서 침해(약탈적 가격설정과 유사)
 - (iii)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인상 정보의 조작 및 배포
 - (iv) 위조·왜곡된 가격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소비자나 타 사업자를 유인
 - (v)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타사업자에 대하여 가격 차별
 - (vi) 등급을 높이거나 낮추는 위장된 수법을 사용하여 고가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구매
 - (vii) 법규를 위반하여 폭리를 추구
 - (viii)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의 불공정 가격행위

2) 유의점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기업이 아니라도 가격법의 적용대상
 - 일부 한국기업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대기업만 중국 가격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오해
- 가격법 위반의 처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행위유형은 가격 카르텔이지만, 기타 여러 가지 가격관련 행위들도 규제대상임을 유의
 - 일부 한국기업들은 가격카르텔 이외의 행위유형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음
- 가격 이외의 카르텔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독점협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규정³⁾ 등에 의하여 처벌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요와 유의점

1) 개요

- 반부정당경쟁법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보장, 공정경쟁의 촉진,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제, 사업자 및 소비자의 법적 권한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주요 반부정당경쟁행위(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타인의 등록상표 모방 등(제5조)
 - 허위표시·허위광고·상업비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제9조, 제14조)
 - 상업적 뇌물행위(제8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보다 유리한 거래기회나 거래조건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자나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자에게 은밀히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의 뇌물제공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 상업비밀 침해행위(제10조)
절도·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획득하는 행위, 획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공표·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요구를 위반하여 그가 얻은 상업비밀을 공표·사용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

3) 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垄断协议 行为的规定

- 부당한 염매행위(제11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제12조)
끼워팔기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을 구입하도록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여 거래하는 행위
- 부정한 경품판매행위(제13조)

2)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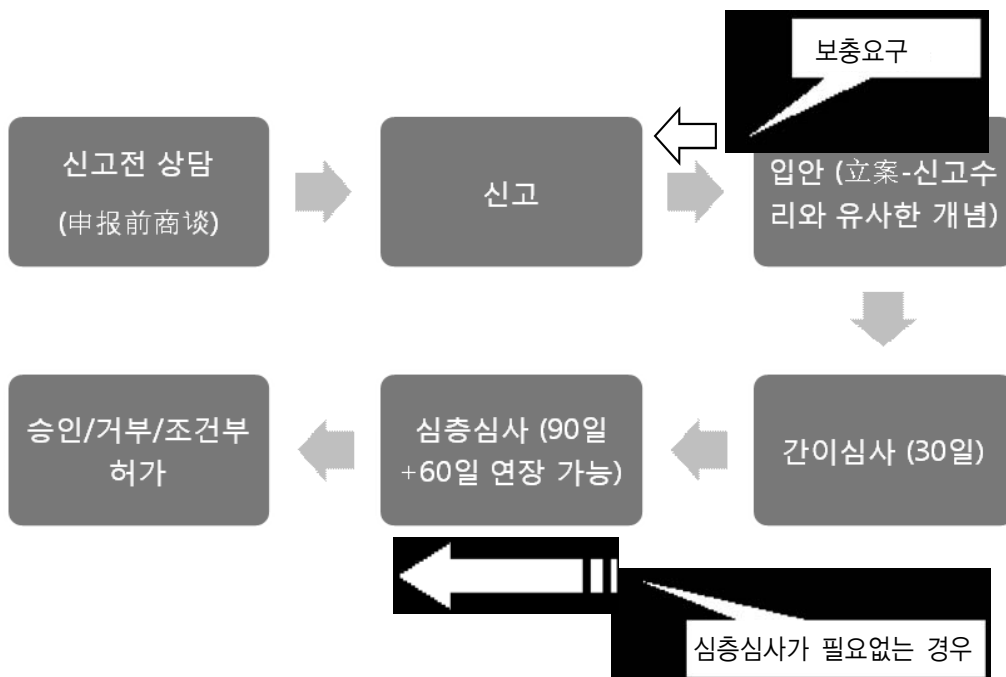
- 부정경쟁행위는 한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음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부정당경쟁법 뿐 아니라 광고법, 형법 등 기타 법률의 위반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비교적 큰 규모의 거래에만 해당하는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이나 위법성이 그 자체로 비교적 명백한 가격담합 등과는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법성의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음

Ⅲ. 중국 경쟁법 집행상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1. 반독점법의 경우

- 합자기업(Joint Venture) 설립의 경우에도 경영자집중신고의무 부과
 - 종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기존기업을 인수(기업결합, M&A) 하는 경우에만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여 왔음
 - 반독점법상 기존기업의 인수가 아닌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경영자집중신고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명백하지 않았음
 - 다만 실무상 2009년부터 일부 합자기업 설립에 경영자집중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으나, 그 사례가 적고 법규가 명백하지 않아 2012. 7. 7.부터 시행된 경영자집중신고표에 합자기업의 경우를 명시함
 - 합자기업 설립의 경우에도 경영자집중신고의무가 발생하여 한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중국상무부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사건 심사 흐름도 >



- 적극적인 심사와 결정
 - 상무부는 4년의 반독점법 시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경쟁당국과 교류하면서 반독점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 상무부, 발개위 및 공상행정국은 공동으로 미국 법무성(DOJ)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011. 7. 27. 반독점법 시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한 정보를 미국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Cross-border M&A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 5. 29. 중국 상무부와, 2012. 5. 30. 발개위 및 공상행정국과 각 반독점법 시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 상무부는 단순히 경영자집중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자산처분, 겸업금지, 사업방식에 관한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음

ex) Seagate가 S사의 하드디스크(Hard Disk) 사업부문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는 2011. 12. 12. Seagate가 S사의 하드디스크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기존의 사업방식을 변경하지 못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조건을 부가하고, 이러한 조건의 준수여부를 독립적 감독 수탁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 반면, 미국과 유럽의 경쟁당국은 본 건에 대하여 부가조건 없이 승인하였음

-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기업에 예상되는 위험
 - 2012. 2. 1.부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영자집중의 조사 처리에 관한 방법⁴⁾을 공포하여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중지
 - 나) 기한 내 지분 또는 자산의 처분
 - 다) 기한 내 영업양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경영자집중 전의 상태로 회복
 - 라)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경영자집중신고표에 의하면 경영자집중신고의무자의 계열사 정보 및 과거 중국내 경영자집중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법률상 경영자집중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M&A를 하고자 할 때에 과거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미신고 사실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새로운 M&A에 대한 경영자집중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역외적용의 증가
 -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 건과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는 2009. 10. 30. 일본 내에서의 M&A였음에도 일본 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경영자집중을 허가함. 중국 정부가 중국 역외에서의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한 사례. 이러한 명령의 배경에는 상무부와 사전협의(申报前商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4) 未依法申报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

- 외국기업 간 해외에서의 경영자집중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기 시작함 → 한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상무부 사전협의의 중요성 증가
 - 경영자집중에 대한 조건부 허가의 일부가 신청인과 상무부간 사전협의(申報前商談)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증가
 - 한국기업으로서는 우선 당해 M&A가 경영자집중신고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예상될수록 사전에 중국 상무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중국 상무부에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경영자집중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우선 신고를 하면 판단해 주겠다는 입장이므로 경영자집중신고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와 사전 상담을 해야 할 실익이 없음
- 해외 반독점법상 인정되고 있는 주요 개념의 도입
 - 중국 반독점법에도 경제력집중에 관하여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⁵⁾, 작지만 의미있고 이전되지 아니하는 가격 상승 (SSNIP)⁶⁾ 등의 개념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은 해외에서 이들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중국 반독점법의 Context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M&A 계획을 수립할 때 반독점심사 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특히 유의
 - 경영자집중신고에 대하여 반독점법상 상무부는 간이심사는 30일, 심층심사는 90일(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60일 연장 가능)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⁷⁾
 - 그러나 실무상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며 보완서류, 설명 등을 요구하고 상무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계산
 - 따라서 최초 신고서를 접수한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상무부의 공식적 심사가 개시되는 경우들이 많음

5) HHI : Herfindah-Hirschman Index. 경제력 집중 분석에 사용

6) SSNIP :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계량적 시장범위 확정에 사용

7)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60일 연장 가능

- 또한 상무부 반독점국에 경영자집중신고가 접수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간이심사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3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하고 심층심사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늘고 있음. 최근 사례들을 보면 최초 신고서 접수 후 약 4~5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심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연장의 문제는 M&A거래의 Deal Closing 시점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경영자집중(기업결합/Merger Filing)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의 경영자집중신고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 M&A에 대한 국가안보심사
 -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인수합병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⁸⁾
 - (i) 국가안전과 관계있는 주요 농산품, 에너지 및 자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운수서비스 시설, 핵심 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을 하는 기업을 인수하고 사실상 지배권을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경우
 - (ii) 군사, 군수 장비기업, 중요하거나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기업, 국방안전과 관계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 이는 미국의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가 일정한 경우,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미국기업 인수합병 시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심사하도록 한 제도와 유사
 - 2012. 10.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대기업인 Sanyi 중공업의 미국 내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자, Sanyi 중공업이 오바마 대통령과 CFIUS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나, 캐나다 정부가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 Petronas의 자국 LNG생산업체 Progress사 인수를 불허한 사건 이후 중국 내에서도 위 국무원규정에 따른 안보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음
 - 실무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 공개되지 않은 처리 관행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음

8) 국무원판공청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 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

2. 가격법의 경우

- 가격카르텔 처벌에 대한 위험성 증가
 - 가격법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인 발개위와 비가격 카르텔(독점협약)을 주관하는 공상행정국은 2012. 9. 20. 유럽연합과 반독점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한국기업들은 가격카르텔로 유럽연합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가 있고, 중국 정부도 이에 관한 사례들을 정부 웹사이트 등에 번역하여 Upload하고 있음. 중국 가격카르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집행동향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망됨
- 카르텔 이외에 가격법에 따른 처벌 사례
 - 2011. 3. 다국적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사가 제품의 가격 인상을 미리 발표하여 여러 도시에서 가격인상 전 물건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인하여 제품 품질 또는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옴. 상해 시 물가국은 유니레버사에 2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
 - 발개위는 2011. 1. 26. 대형유통체인점인 까르푸와 월마트의 19개 점포에서 허위원가표시, 소비자를 오도하는 가격 표시 등을 통하여 가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최고 과징금인 점포당 50만 위안, 총 9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
 - 이와 같은 외국기업,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당해 행위에 대한 벌금액보다, 일반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이미지 실추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됨
- 자진신고(Leniency)제도의 활용과 유의점
 - 반독점법 제46조 제2항은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독점협약의 관련 정황을 보고하고, 또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이를 감안하여 당해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한국과 중국의 독점협약의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비교 >

	중국 반독점법	한국 공정거래법
조항	제4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독점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incentive	임의적 감면	필요적 감면

3. 반부정당경쟁법의 경우

-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반부정당경쟁법은 한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유사한 다양한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음
- 반부정당경쟁법은 다음의 관련 법령들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행위의 효과가 어떠한 법 위반이 될 것인가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
 - 상표법
 - 광고법
 - 소비자보호법
 - 저작권법
 - 불법행위법(침권책임법)
 - 부정당 경쟁 민사안건 심리 응용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4.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 Nike Case

- 사안의 개요
 - 2011. 6. 24. Nike사는 Nike Zoom Hyperdunk 2011이라는 농구화를 출시, 2011. 8. 5. 중국시장 판매 개시
 - 당시 중국의 Nike는 “밑창 앞뒤 부분에 에어쿠션(Zoom Air : 气垫)이 있어서 점프가 용이하고 착지할 때 더욱 편안하다”는 광고를 함
 - 그러나, 한 네티즌이 위 농구화를 구매 후 밑창의 뒤 부분에는 에어쿠션이 있으나 앞부분에는 없음을 발견하고,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서술함
 - 더구나 위 농구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앞뒤부분에 모두 에어쿠션을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밝혀짐
 - 또한, 위 농구화의 중국내 판매가격은 1,299위안(약 23만 원)으로서 미국내 판매가격보다 약 500위안(약 9만 원)이 비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킴(참고로 1,299위안은 여러 중국 지방의 1달 최저임금에 상당)

- 이와 같이 외국에 판매하는 제품과 중국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차이 및 가격 차이를 두는 이중기준(双重标准)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정서가 고조됨
- 중국정부의 조치와 처벌
 -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은 Nike사에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487만 위안(약 8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Nike사의 이중기준(双重标准)이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중기준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허위, 기망광고를 이유로 한 처벌
- 시사점
 -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해외(또는 본국)에서의 판매가와 중국내 판매가를 달리 책정하고 있음
 - ex) 스타벅스커피의 경우에도 미국내 판매가보다 중국내 판매가가 20~30% 정도 비싸다는 이유로 중국내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중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구매력 대비 가격 차이는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모 타이어 회사가 중국 소비자의 날에 중국 중앙TV(CCTV)로부터 불량타이어에 관한 보도가 있는 이후 소비자불매운동의 타겟이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음.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의 대상이 될 경우 커다란 매출손실이 발생. 중국의 일반소비자들에게 소비재를 판매하는 한국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보호법제, 광고법제, 리콜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함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중국 경쟁법의 심화 연구

- 중국 반독점법이 시행된 후 4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집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쟁법에 대해서는 법규의 번역이나 산발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음
- 중국 경쟁법의 연구는 어느 한 기업에서 주도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 또는 경제단체에서 주도하여 법률, 정책 전문가들이 연구할 필요
- 한국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향후 중국 경쟁법 위반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업적 손실을 미리 방지할 필요
-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한국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이 필요

2. 기업의 대응

- 중국기업을 M&A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중국 반독점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 경영자집중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소이므로 미리 위험을 파악
- 최근 중국 상무부 반독점법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관한 관행적 해석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 사례를 연구하여 제출한 결과, 상무부의 의견을 변경하도록 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M&A에 대해서도 중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국내 경영자집중(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중국에서도 준법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Compliance**의 측면에서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연구하고 중국사업 **Practice**에 대해 세심하게 내부준칙을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
- 사내 중국 전문인력 양성과 중국의 법정책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